

이동통신(IMT)용 주파수 할당 공고

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00MHz, 1.8GHz 및 2.1GHz대역 이동통신(IMT)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9일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1.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

가. 할당대상 주파수

- (1) 800MHz대역 10MHz폭 : (상향)819~824MHz/(하향)864~869MHz
- (2) 1.8GHz대역 20MHz폭 : (상향)1755~1765MHz/(하향)1850~1860MHz
- (3) 2.1GHz대역 20MHz폭 : (상향)1920~1930MHz/(하향)2110~2120MHz

나. 할당대역폭 : 상기 “가”항의 할당대상 대역 중 사업자당 최대 20MHz폭

2. 할당방법 및 시기

가. 할당방법 : 전파법 제11조(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)의 규정에 의한 “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(경매)” 방법을 적용함

나. 할당시기

- (1) 800MHz대역 : 2012. 7. 1.
- (2) 1.8GHz/2.1GHz대역 :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을 통지한 날로 할당함

3. 주파수 이용기간 :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함

4.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

가. 경매방법은 동시오펜입찰 방식으로 하고 방법 및 절차 세부사항은 붙임 “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” 참조

나. 최저경쟁가격

(1) 800MHz대역(10MHz폭) : 2,610억원

(2) 1.8GHz대역(20MHz폭) : 4,455억원

(3) 2.1GHz대역(20MHz폭) : 4,455억원

※ 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대역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복수의 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5.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

가. 주파수용도 : 이동통신(IMT) 서비스 제공용

나. 기술방식 :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(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-2000 및 IMT-Advanced를 말함)

6.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

(1) 전과법 제13조(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

(2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특수관계인의 범위)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을 하여야 함

- (3) 이동통신(IMT)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법인(신규사업자)이 할당신청을 한 경우는 해당 법인만을 대상으로 경매를 우선 시행
- (4) 2.1GHz대역은 2.1GHz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(주), (주)케이티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

7. 할당 조건

가. 망 구축 의무 및 제재 조치

- (1) **준수의무** :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 15%, 5년 이내 30%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“주파수이용계획서”에 제시하여야 하며,

< 기지국 설치기준 >

구 분	기준 기지국수	3년 이내 15% 이상	5년 이내 30% 이상
800MHz대역	29,000국	4,350국	8,700국
1.8/2.1GHz대역	40,000국	6,000국	12,000국

- 신청법인이 역무의 제공시기,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

(2) 제재조치

- 위원회는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,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예정임

< 제재 조치(안) >

- ◇ 중간(3년 및 5년) 점검결과 미이행시 : 이용기간 10%씩 단축 (할당대가 반환 없음)
- ◇ 이용기간 종료(재할당)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: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

나. 간섭보호 계획 제시

- 할당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 인접대역 무선국과의 간섭에 대비하여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, 간섭 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※ 정부는 사업자간 협의결과 및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한 간섭보호 기준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

8.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

- “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”에 의한 낙찰자를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함
-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“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”에 따라 그 다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

9. 주파수할당 신청

- 신청기간 : 할당공고일부터 1월

-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,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붙임 :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

[붙임]

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

제1장 일반사항

□ 할당신청

- 할당신청법인은 참여제한이 없는 모든 대역에 대해 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.

※ 할당 주파수는 경매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법인당 최대 20MHz 폭으로 제한

-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시 할당신청서, 법인정관,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, 주파수이용계획서,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 및 서약서<양식1>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기타 할당신청 구비서류의 작성·제출·수정 및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」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-15호)에 따른다.

□ 경매일정의 통보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에게 경매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.

□ 경매시행

- 제2장 경매방법에 따라 경매를 시행한다.

□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통보

- 주파수가 낙찰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한다.

- 800MHz대역 할당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 후 기 납부한 보증금 중 800MHz대역 최저경쟁가격의 10/1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환급해 줄 수 있다.

□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사항의 이행

-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「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」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-34호) 및 「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」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-15호)에 따른다.

□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된다.
-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차순위자(차가 제시자)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
 - 이 경우, 차순위자의 입찰가가 당초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, 이 때 할당 대가는 차순위자의 입찰가로 한다.

□ 주파수 할당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주파수할당통지서를 교부한다.

제2장 경매방법

□ 기본원칙

- 금번 경매는 800MHz, 1.8GHz, 2.1GHz 3개 대역을 동시에 경매하되, 1회 이상의 입찰과정(라운드)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“동시오름입찰방식”으로 한다.
- 입찰자는 매 라운드마다 3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입찰할 수 있다. (참여가 제한된 대역은 입찰할 수 없다)
-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가입찰자가 되면, 그 이후 라운드부터 그 대역에서 다른 최고가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대역에도 입찰할 수 없다.
- 최고가입찰자가 아닌 입찰자는 다음 라운드에서 그 대역 또는 다른 대역 중 하나의 대역에 입찰할 수 있다.
- 모든 주파수 대역에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며, 이때 대역별 최고입찰가를 그 대역의 낙찰가로, 최고가입찰자를 그 대역의 낙찰자로 선정한다.
-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(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) 그 이후 라운드부터 어느 대역에도 입찰을 할 수 없다.

□ 최소입찰액

- 입찰가는 라운드별 최소입찰액 이상, 억원 단위로 제시되어야 한다.
- 최소입찰액은 각 라운드에서 입찰 가능한 최저금액을 의미하며,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증가한다.
- 1라운드의 최소입찰액은 최저경쟁가격으로 한다. 2라운드부터의 최소입찰액은 이전 라운드 최고입찰가에 입찰증분을 더하여 결정한다.

- 입찰증분은 이전 라운드 최고입찰가의 3% 범위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.
- 최소입찰액 및 입찰증분의 금액단위는 억원이며, 그 미만의 값은 반올림한다.

□ 입찰유예

- 입찰유예는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어느 대역에도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고 쉬는 행위를 의미하며, 입찰서에 입찰유예를 신청하여야 입찰유예가 인정된다.
- 입찰유예 허용횟수는 총 2회이며, 입찰유예를 연속된 라운드에 신청할 수 없다
 -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,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허용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로 처리된다.
 - 입찰자는 입찰유예를 1라운드에서 신청할 수 없다.
 -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유예를 신청한 후 그 다음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허용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로 처리된다.

□ 입찰포기 등

- 입찰포기는 최고가입찰자가 아닌 입찰자가 어느 대역도 더 이상 입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찰포기로 처리된다.
 -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포기를 신청하는 경우
 -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
 -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라운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
 - ※ 연속된 라운드 중 두 번째 라운드 입찰이 무효로 되어 입찰유예로 처리되는 경우는 제외

- 입찰자가 허용횟수가 남아있지 않는데 입찰유예를 신청하는 경우
- 입찰자가 입찰유예 허용횟수가 남아있지 않는데 무효입찰을 한 경우
- o 입찰자가 1라운드에서 입찰을 하지 않으면 할당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□ 동점자 처리

- o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둘 이상인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첨에 의하여 그 대역의 최고가입찰자를 결정한다.

□ 라운드 진행시 고지사항

- o 방송통신위원회는 매 라운드 종료 후 대역별 최고입찰가를, 다음 라운드 시작시 대역별 최소입찰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고지한다.

제3장 기타 준수사항 등

- 할당신청법인(특수관계인 포함)은 할당공고 이후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입찰가, 입찰대역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(특수관계인 포함)과 논의·합의 하거나 공개하는 행위
 - 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」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 관련 담합행위
 - 고의적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-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법인은 전파법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파수할당 취소,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또는 2년 이내의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- 입찰자의 질병·사고,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경매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매·입찰의 연기·중단·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, 「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」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-15호), 「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」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1-34호)에 따른다.
- 경매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「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」를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기타 경매장소·경매 진행방식 등 경매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